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와 성범죄 신고 의무 제도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사)탁틴내일
구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교육의 목적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있게 실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의 자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목 차 】

Part I

제1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

제2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개념

Part II

제1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제2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제3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Part III

제1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대책 알아두기

제2장. 관련 서식

Part I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개념 이해



제1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

1. 취업제한제도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 취업(예정)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 중인 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차단하여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들이
스스로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신고율을 높이고**
조기에 개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제2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개념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와 학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여자청소년을 간음하는 것
-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
(미수범도 처벌)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는 것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 · 운반**하는 것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것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금품,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행위** 등을 하는 것

(4)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 하는 것

(일자리, 잠자리 등의 제공도 해당)

(5)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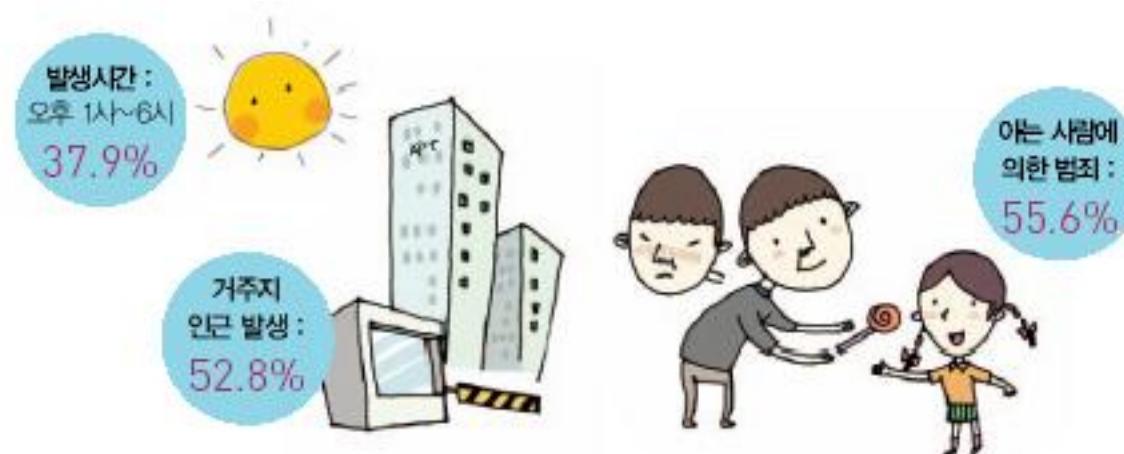
-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
- **위계,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
-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
-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는 것**

(6) 알선영업행위 등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알선하는 것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것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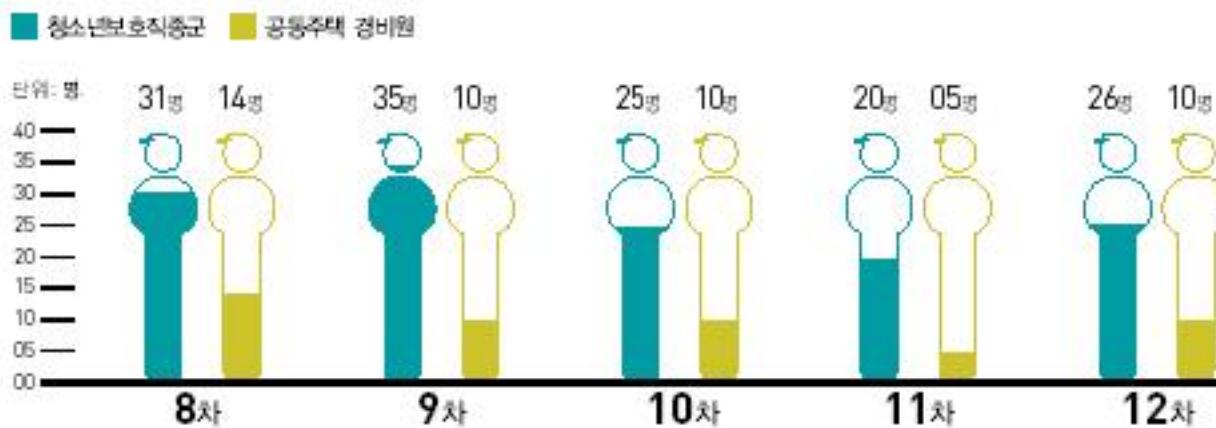
(1) 거주지 인근에서, 낮 시간에,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증가



자료출처 : 2008년 7월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통합 발표자료

조사분석 : 2007년 1월~6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 확정자료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청소년보호직종군 종사자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의한 범죄 지속적으로 발생



청소년보호직종군 : 경찰, 사회복지사, 교사, 학원강사, 교육기관 차량 운전자 등

자료출처 : 2007년 12월 제1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년에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 중에는
22명의 학원강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높은 재범률

본범행 이후 연속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7.0%	11.3%	12.7%	7.0%	9.9%	4.2%	47.9%

(4) 피해아동청소년 분석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1,226명의 **평균나이 14세**,
남자아동청소년 증가(2.1%→3.8%)

□ 피해 유형별 평균 나이

강간 14세, 강제추행 11세, 성매수 16세, 성매수 알선
17세

□ 성별

여자 피해아동청소년은 1,179명(96.2%), 남자는
47명(3.8%)



(5) 범행장소로의 유인방법

연령	유인방법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해당사항 없음	40.3%	44.3%
	편의제공, 금품	11.1%, 6.9%	3.7%, 3.7%
	사칭 및 위장	8.3%	3.7%
	완력, 위협, 폭력	8.3%, 5.6%, -	16.2%, 3.4%, 1.0%
	놀이유인, 칭찬	4.2%, 1.4%	11.8%, 1.0%
13세 이상	해당사항 없음	34.9%	65.1%
	위협, 완력, 폭력	9.7%, 8.7%, 4.6%	3.1%, 6.2%, -
	놀이유인, 칭찬	6.7%, 1.0%	1.6%, 0.8%
	사칭 및 위장	7.2%	4.7%
	놀이유인	6.7%	1.6%

(6) 최근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특징

-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문제(짱문화, 왕게임, 왕따)
- 인터넷망의 발달로 인한 유해영상물 확산(모방범죄)
- 죄의식의 부재(집단성폭행, 강간, 재범의 증가)
- 사건의 장기화 및 피해 확산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대처

(1)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징후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신체증상, 퇴행행동	정신신체증상, 행동장애	자아손상, 반항 및 자해
퇴행행동-손 빨기 야뇨증 어린양 말하기(baby-talk) 악몽 수면변화 지나치게 매달림 성적놀이 성에 대한 관심 자위행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수면장애 야뇨증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부정적인 신체상 친구관계의 곤란 체육시간 기피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 우울, 불신감, 해리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잦은 싸움 친구관계의 곤란 약물남용 불신감 성에 대한 혼란, 임신 자살, 신체증상, 해리

(2) 성범죄 예방법

- 취업(예정) 중인 직원의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여 성범죄자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통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
- 기관 종사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과 다른 사람의 성을 소중히 여기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 실시
-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예방을 위해 컴퓨터, 케이블TV 등은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청내용과 이용시간 관리

TIP. 음란물을 접하는 걸 발견했을 때

《 대화방법 》

-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아이가 성장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게 되면 **상대방이 입을 피해**와 함께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듣게 설명한다.

《 대처법 》

- 아이가 음란물의 유해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삭제하도록 유도**한다.
- 아이의 동의를 받아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컴퓨터는 거실 등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심각하게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 나이에 맞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올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한다.
-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도록 한다.
-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 **자기 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 음란비디오나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음란물을 보지 않도록 한다.
- 응급 시 대처방법을 알도록 한다.

◇ 연령별 성범죄 피해 예방교육 ◇

18개월	▷ 신체 각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알게 한다.
3-5세	▷ 자기 몸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 몸을 만지려고 하거나 만질 때는 "싫어요", "안돼요"라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반복해서 알려준다. ▷ 성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사실에 근거하여 적절히 알려준다.
5-8세	▷ 집 밖에서의 안전에 대해 교육한다. ▷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나쁜 느낌을 받았을 때에는 바로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8-12세	▷ 안전에 대해 강조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곳(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그 외 위험한 곳들)을 알려준다. ▷ 사춘기의 신체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교육한다.
13-18세	▷ 개인적인 안전과 위험한 장소들에 대해 강조한다. ▷ 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의 개념, 데이트 할 때의 주의점, 성병, 임신 등에 대해 알려준다.

□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한다.
- 성충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절 할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한다.
- 내가 좋으면 상대방 역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상대가 싫다고 표현 할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무반응을 'OK'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3) 사례로 알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례1. A(14. 중3)군 등 6명은 지난 2월 초...

사례2. 중학생 5명이 초등학교 남학생 6명과 함께...

사례3. 고교 교사 A씨가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며 낸...

사례4. 서울 ▲초등학교 ▲아무개 교사는 2005년...

사례5. 장○○(만15세, 중3재학, 서울시 동작구)은 접대부 친구...

사례6.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김씨(59세)는...

사례7.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사례8. 행신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의자 이모씨(42·남)가...

사례9.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종이컵을 가지러 온 B양(9)을...

(4) 성범죄 대처법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자가 있을 시에는 보호자에게 알려서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도록 한다.

- ① 피해사실 확인하기
- ② 증거 확보

◇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

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아동의 건강상태유지 및 고소를 대비한 증거채취를 위하여 산부인과 및 외과 진료를 받게 도움을 준다.○ 신체적인 치료와 검사로 성폭력에 대한 외상 진단을 마친 후 피해아동과 보호자는 심리적 진단을 받게 된다. <p>※ 성폭력과 관련된 치료비용은 여성부에서 무상지원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아동의 심리적인 상태를 면담과 행동관찰, 평가지 등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p>※ 치료 계획과 법적 절차 진행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p>			
법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피해아동의 보호자 스스로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table border="1"><thead><tr><th>아동</th><th>보호자</th></tr></thead><tbody><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에 잘 적응하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에 대해 도움을 준다.</td></tr></tbody></table>	아동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에 잘 적응하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아동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에 잘 적응하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에 대해 도움을 준다.			

*피해자

- 신속하고 침착하게 적절한 대처와 지원을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한다.
-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가해자

- 가해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한다.
- 성범죄(성폭력)에 대해 바로 인식하게 한다.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일

- 단 · 장기로 올 수 있는 후유증을 관찰
- 피해 · 가해자의 비밀 엄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사기관에 신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Q&A로 알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Q1. 왜 어린이를 성폭행 할까요?

Q2. 5세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Q3. 성폭력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Q4. 고소하면 몇 번이나 경찰서를 가야 하나요?

Q5.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아동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

- 어린이는 힘이 없고 기본적으로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보가 없는(특히 교육을 받지 않은 8세 이하) 어린이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든 성인을 믿습니다.
- 어린이는(특히 7세 이하-Piaget도덕성발달이론) 성인의 동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외모나 태도를 보고 선·악을 판단합니다.
- 성인이 하는 일이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성인에게 복종하라고 배워 왔기 때문에 겁이 나고 싫더라도 시키는 것을 한답니다.
- 자신의 신체나 성에 대한 호기심은 많은데 올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적 행동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속이면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 가해자에게 협박 받으면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art 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 집중 분석



제1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아동청소년과 성범죄자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2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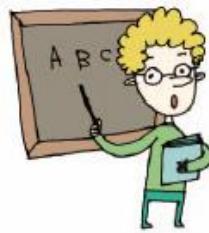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 ※ 서울 지역 교육청들과 구 국가청소년위원회(현 보건복지가족부 통합), 일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2007년 12월 서울 서초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 소재 학원 ·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등 120곳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유치원의 범죄경력조회 실시율은 전체의 21%(26곳)
 - 학원 · 교습소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인지율은 59%
 - 복지시설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인지율은 82%
-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유치원은 70%(84곳)
학원 · 교습소와 보육시설의 인지율은 각각 88%, 9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 중 학원강사 등은 22명

- 2007년 신상공개자료 중에서 -

1.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치원, 학교,

청소년대상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공연장, 극장, 도서관, 시민회관, 복지관 등)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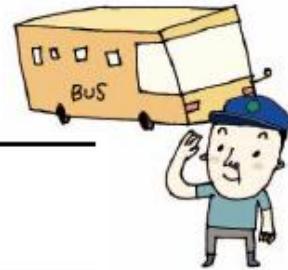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2. 성범죄경력 조회방법 및 제출서류

(1) 조회방법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허가증'을 구비한다.



해당기관의 소재지 관할경찰서를 확인하고 민원실(형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화신서'를 받아 서류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제출서류

-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허가증
- 기관장 신분증 사본

※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점검 및 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기관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한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6조

- 청소년 취업관련 교육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해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폐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폐쇄, 등록 . 허가취소를 요구

(2) Q&A로 알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Q1.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는 직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Q2. 성범죄여부를 취업을 한 후에 확인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 Q3.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 Q4.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모든 범죄가 조회되나요?
- Q5. 다른 범죄경력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6. 범죄경력 조회 시 어떤 종류의 형까지 적용되나요?

제2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1. 신고의무 대상기관 및 신고의무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의무 대상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교	시설의 장 및 종사자: 교장, 교감, 교사, 기간제교사, 촉탁 의사,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의료기관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의 의료인 등
아동복지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육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 등
청소년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시설의 장 및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가족복지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소장, 상담 원, 한가족복지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장, 상담원,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지원기관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청소년활동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청소년쉼터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시설의 장 및 종사자

2.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 및 위반 시 조치사항

(1)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신고의무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5, 제36조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Q&A로 알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Q1. 시설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Q2. 3년 전 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 Q3.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또는 www.klac.or.kr



◇ 표를 통해 알아보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신고의무자 ◇

기관 종류	취업제한 대상기관	열람권자	신고의무자
유치원	○	○	○
학교	○	○	○
학원 및 교습소	○	○	○
청소년보호센터 / 청소년재활센터	○	○	○
청소년활동시설	○	○	○
청소년쉼터	○	○	○
보육시설	○	○	○
아동복지시설	○	○	○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	○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	×
체육시설	○	○	×
의료기관	×	×	○
장애인복지시설	×	×	○
한가족복지시설	×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	×	○
청소년 지원 등의 기관			

제3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1. 신상정보 등록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 관리하도록 한 제도이다.

※ 전체 성폭력 범죄 1만5,326건 중 재범비율이 50.3%에 해당하는 8,2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는 검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1) 등록기간

형 집행 후 10년

(2) 등록대상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



(3) 신상정보 등록 사례

사례1. 2006년 2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당시 초교6)양을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사례2. 2003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년 여 동안 제주시 이도동 주택가에서 전기검침원 등을 가장해...

사례3. 지난 5월 2일 한 상가 내에 컴퓨터를 하며 혼자 있던 A모(8)양에게 다가가...

2. 신상정보 열람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관할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행 피해자가 지난 2005년 3,784명에서 2007년 5,460명으로 2년 만에 30.6% 증가하여 예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 열람기간

형 집행 후 5년

(2) 열람대상

-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



(3) 열람권자

-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4) 열람정보

성명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5) 열람장소

시·군·구 관할경찰서



(6) 구비서류

- 열람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알아두세요 ||

열람정보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5조

Part Ⅲ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대책



제1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대책 알아두기

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발효

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실형 전과자 등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법원의 판결로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관제센터에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전자발찌가 범죄자와 5m 이상 떨어지면 관제센터에 경고 신호를 보내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24시간 보호관찰함으로써 재범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제'가 시행될 경우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이 용이해져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학교나 놀이터 주변 문구점과 약국 등 전국 2만5068곳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했다.
안전지킴이집은 위험에 처한 아동을 돋고 경찰지구대와 비상 연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YONHAP NEWS

안전지킴이집 상황별 대처요령

납치, 유괴 등 강력범죄 피해아동의 도움요청

- 납치, 유괴 등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아동이 있을 시 가장 먼저 아동의 안전확보에 집중
-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상황을 잘 살펴본 후 즉시 112 또는 관할지구대에 신고 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

학교폭력 ·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도움요청

- 아동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경우, 즉시 112, 관할지구대,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one-stop지원센터로 신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도움요청 사실을 고지
- 아동이 학교 또는 집에 알려지길 원치 않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one-stop지원센터 또는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상담 받을 것을 고지

교통사고 피해아동의 도움요청

- 가장 먼저 아이가 다친 곳은 없는지, 응급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본 후 즉시 112 또는 관할지구대로 신고
- 신고와 함께 사고 차량이 도주하였다면 차량번호 등 목격한 내용을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여 전파
- 부모님께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찰관 도착 또는 부모와 연락 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설득

길 잃은 아동의 발견

-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가장 먼저 아동을 안심시킨 후 보호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확인
-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112 또는 관할지구대에 신고

3. 폐쇄회로(CC)TV 설치

서울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모이지만 안전시설은 미비한 아파트 놀이터와 동네 공터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 정신질환자 치료감호제도

'소아성기호증' 환자 등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도입

2008년 12월부터 아동 대상 성범죄 정신질환자는 최장 15년간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 다른 나라의 예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고 있다.○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2000년 7월)○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뉴스와 신문 등에 성범죄자의 인적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킨다.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운영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극히 드문 경우에 외과적 거세 실시

제2장. 관련서식

1. 서식작성 실습

서식1. 범죄경력조회동의서(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서식2. 범죄경력조회신청서(기관)

서식3. 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

서식4. 열람정보열람신청서(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관련기관의 장)

서식5. 대상청소년발견사실통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관련기관의 장)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 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 국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택 :	핸드폰 :
<p>상기 본인은 충청북도단양교육청 취업예정자로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귀 동의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정찬서 감(급)부</p>			
<p>*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기 합니다.</p>			

210mm×20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0호서식]

(말 쪽)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경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기관명			
	주소			
대 상 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 국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취업 또는 취업 예정 직위				
<p>「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암)	
<u>접수서장 부탁</u>				
<p>*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기합니다.</p>				
구비서류 : 위촉확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 ²)				

청소년상담 지원기관 : 국번없이 1388
내일청소년상담소 : 02-3141-6191
수사기관(경찰서) : 국번없이 112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아동학대신고 : 국번없이 129

전국청소년성교육기관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서울) 02-338-7480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서울) 02-2677-9220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서울) 02-950-9641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서울) 02-2204-3140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서울) 02-3012-1318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인천) 032-446-1318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경기) 031-475-3253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경기) 031-954-8050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강원) 033-645-1318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강원) 033-255-6651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대전) 042-222-8847
충주시호암청소년성문화센터(충북) 043-856-7816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충북) 043-258-8001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경북) 054-436-0218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경남) 055-832-9273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울산) 052-256-1318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산) 051-303-9622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SAY(부산) 051-558-1224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광주) 062-522-1388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전북) 063-251-1318
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전북) 063-463-1230
목포청소년성문화센터(전남) 061-272-1318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제주) 064-760-3451



120-8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14-9
대표전화 (02)338-7480 팩스 (02)3141-9339